

경영진보수 및 직무청렴의무에관한규정

경영진보수 및 직무청렴의무에관한규정

제정	2012. 12. 26
일부개정	2015. 12. 28
일부개정	2016. 3. 29
일부개정	2017. 8. 29
일부개정	2018. 8. 29
일부개정	2022. 8. 18
일부개정	2025. 12.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진의 보수 및 직무청렴의무(이하 “청렴의무”라 한다)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관 경영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수 및 청렴의무 준수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원장, 직속부서장, 부설기관장에 대해 적용된다.<일부개정 2016.3.29.>

제2장 보수

제4조(보수의 정의) 경영진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으로 구성한다.

제5조(지급시기와 방법) 보수의 지급시기는 법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통화로서 본인에게 지급하되, 본인 사망시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본연봉) ① 원장의 기본연봉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의 기본연봉은 원장과 상호 합의하여 정하되, 매월 12분의 1씩 급여지급일에 지급한

다. 다만, 주무부처가 경영진의 보수 등에 대한 지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 8. 29>

- ② 제1항의 기본연봉은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를 포함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 할 수 있다.
- ③ 경영진이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는 직원의 보수 계산방법을 따른다.

제7조(성과급) ① 경영진의 성과급은 외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관의 재무 상태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의 성과급은 이사장이 결정하고,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의 성과급은 원장과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29.>

③ <삭제 2025. 12. 22.>

④ <삭제 2025. 12. 22.>

⑤ 원장이 징계에 따라 파면된 경우, 이사회 의결에 따라 성과급의 일부분을 감액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원장 본인의 비리와 관련하여 파면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성과급 지급후의 조정) ① 경영진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에 정산 오류등의 발견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성과급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 받아야 한다

② 경영진이 중도에 퇴임하여 가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이 퇴임한 경영진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퇴임한 경영진이 그 금액을 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퇴직금) ① 퇴직금은 경영진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보수로 한다.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법인에서 정한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③ 제1항의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재임기간에 대하여는 재임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원장이 징계에 따라 파면된 경우, 이사회 의결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분을 감액

■ 경영진보수및직무청렴의무에관한규정

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장 본인의 비리와 관련하여 파면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그 밖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를 준용한다.

제10조(연봉표) 경영진의 연봉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연봉표는 “별표1” 과 같다.

제11조(기타) 경영진은 제4조에서 규정된 보수 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원장을 제외한 경영진의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은 법인 내부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5.12.28.>

제3장 청렴의무 준수

제12조(청렴의무) ① 경영진은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 규정 등에 금지된 사항
2.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3.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4.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5.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6.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7. 기타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해당기관 사업 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8. 성희롱, 선거개입행위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9. 기타 규정 및 행동강령 등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제13조(계약의 시기 등) ① 법인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 경영진이 임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준수기간은 경영진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관련 사항은 재직기간 이후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이사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은 원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일부개정 2016.3.29.>

④ 직무청렴계약서의 세부양식은 별지 제1호에 따른다.

제14조(위반시 제재) ① 원장은 경영진의 청렴의무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즉시 이사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 8. 29>

② 경영진이 청렴의무 위반 시 징계의 대상이 된다. 원장 징계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에 결정하며,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일부개정 2016. 3. 29.>

제15조(직위해제) ① 이사장은 원장에 대하여 또한 원장은 원장을 제외한 경영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명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자

2.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② 직위해제를 받은 경우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 칙<2012.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득 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득 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은 시행일로부터 임기 중인 부서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기준 시행 이후 선임된 부서장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은 정관시행일과 같이한다.

- 경영진보수및직무청렴의무에관한규정

부 칙<2017.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은 정관시행일과 같이한다.

부 칙<2018.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은 정관시행일과 같이한다.

부 칙<2022. 8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은 정관시행일과 같이한다.

부 칙<2025.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일부개정 2016.3.29., 2018.8.29., 2022.8.18. 2025.12.22.>

원장 및 부서장의 표준연봉표

(단위: 천원)

구분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	원장
연봉 범위	115,000 이하	150,000 이하

■ 경영진보수및직무청렴의무에관한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경영진 직무청렴계약서

본인은 울산테크노파크(이하 '법인' 이라 한다)의 경영진으로서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이 법인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법인의 경영진 보수 및 직무청렴의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서 정한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1.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규정에서 정한 청렴의무를 반드시 실천하고 윤리적 행동을 견지하겠습니다.
2.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 등 모든 내용은 이 계약과 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3.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상 처벌,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규정에서 정한 신분상 제재 및 경제적인 제재를 수용하겠습니다.
4. 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 심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2조에 의거 원장은 이사장과 직속부서장은 원장과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 계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기로 합니다.

별첨: 경영진 보수 및 직무청렴의무에 관한 규정 1부

년 월 일

울산테크노파크

이사장(원장) ○ ○ ○

서명 (인)

울산테크노파크

원장(부서장) ○ ○ ○

서명 (인)